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자치행정과-19736
등록일자	2015.11.12.
결재일자	2015.11.13.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동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직위대리	
오성희	임동호	옥종식	이창훈	11/13 주윤중	
협조자	전산정보과장 김청호				

- 2016.4.13.(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
국외부재자 신고·접수 실시

□ 신고기간 : 2015.11.15(일) ~ 2016.2.13.(토)(91일간)

※ 접수 마감일(2016.2.13.(토))은 정상근무일과 동일하게 접수

□ 대상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자 중

- ① 사전투표기간 개시일(2016.4.8.~4.9)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②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출서류

- ① 국외부재자신고서, ②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 제출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온라인신고 및 서면신고

(서면신고처)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동주민센터에 제출
(우리구 : 자치행정과 및 22개동 주민센터 민원실)

□ 행정사항

- 전산정보과 : 강남구 홈페이지에 국외부재자 접수 안내 및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와 링크
- 동주민센터 : 국외부재자 접수 창구 개설 및 안내표지·신고서 비치

강 남 구
(자 치 행 정 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p>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p>「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침해」라는 헌재의 결정('07.6.28)에 따라, 2012년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재외 선거제도가 도입('09.2.12 공직선거법 개정)되었음</p>																											
추진 경위	<p>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p> <p>· 추진경위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실시</p>																											
예산 사항	<p>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수혜자 및 범위	<p>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p> <p>·</p>																											
분야별 검토사항 (계속 :) (신규 :)	<p>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① 관련부서 협조</td> <td style="width: 30%; border-bottom: 1px dashed black;">-----</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right;">()</td> </tr> <tr> <td>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td> <td style="border-bottom: 1px dashed black;">-----</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r> <tr> <td>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td> <td style="border-bottom: 1px dashed black;">-----</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r> <tr> <td>④ 미래행정 수요예측</td> <td style="border-bottom: 1px dashed black;">-----</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r> <tr> <td>⑤ 시장조사</td> <td style="border-bottom: 1px dashed black;">-----</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r> <tr> <td>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td> <td style="border-bottom: 1px dashed black;">-----</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r> <tr> <td>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td> <td style="border-bottom: 1px dashed black;">-----</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r> <tr> <td>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td> <td style="border-bottom: 1px dashed black;">-----</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r> <tr> <td>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td> <td style="border-bottom: 1px dashed black;">-----</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r> </table> <p>·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p>	① 관련부서 협조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① 관련부서 협조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타 기관 사례	<p>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p> <p>·</p>																											
전문가 자문	<p>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p> <p>·</p>																											

- 2016. 4. 13(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관련 - 『 국외부재자 』 신고 · 접수 실시

-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침해」라는 헌재의 결정('07.6.28)에 따라, 2012년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재외 선거제도가 도입('09.2.12 공직선거법 개정)되어,
- 2016. 4.13(수)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에 따라 재외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를 실시하고자 함

I 개 요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자 중

- ① 사전투표기간 개시일(2016.4.8.~4.9)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②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출서류

- ① 국외부재자신고서, ② 여권사본
-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 제출방법

- 온라인 신고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 전자우편(self-governing@gangnam.go.kr)
 -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 · 동주민센터에 제출 (우리구 : 자치행정과, 22개 동주민센터 민원실)

□ 재외선거권

- 국외부재자 : 「 주민등록자 ⇒ 대선, 국선(비례, 지역)
 ↳ 국내거소신고자 ⇒ 대선, 국선(비례)
 - 재외선거인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 ⇒ 대선, 국선(비례)
- * 재외국민 261만명(체류자 149만, 영주권자 112만) / 19세 이상 약 208만명

II

세부추진계획

□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주소 결정·공고(기시행)

- 시 기 : 2015. 10. 16.(금) ~ ※ 재외공관과 동시 실시
- 공고권자 : 구·시·군의 장(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권자)
- 전자우편주소 : self-governing@gangnam.go.kr

□ 국외부재자신고 접수장소 운영

- 온라인 접수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 전자우편(self-governing@gangnam.go.kr)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서면(우편 또는 인편) 접수처
 - 접수기간 : 2015. 11. 15.(일) ~ 2016. 2. 13.(토) (91일간)
 - ※ 접수 마감일(2016.2.13.(토))은 정상근무일과 동일하게 접수
접수기간 중 공휴일은 접수 미시행
 - 접수장소 : 자치행정과 및 22개동 주민센터 민원실
 - 행정사항
 - 동주민센터 : 민원실에 접수창구 개설 및 국외부재자신고 서식비치【별첨1】

신고서 접수시 주민등록업무시스템(업무코드9710) 입력
접수마감일 후 신고서 원본 및 접수내역 자치행정과 제출

□ 국외부재자신고에 대한 홍보·안내

- 시 기 : 2015. 11. 15(일) ~ 2016. 2. 13(토)
- 홍보(안내)내용
 - 강남구 홈페이지에 국외부재자 신고방법 등 안내
 - 강남구 홈페이지와 중앙선관위홈페이지 (<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를 링크
 - 각 동주민센터에 국외부재자신고기간 안내 배너 비치
- 안내문(안) : 【별첨 2】

Ⅲ 소요예산

□ 소요예산 : 금1,793,000원

- 안내표지(탁상용·부착용) 구입 : 22,000원 × 24개(구·동) = 528,000원
- 배너 구입 : 55,000원 × 23개(구·동) = 1,265,000원
- 예산과목 : 자치행정과, 주민참여 및 자치역량강화, 동 행정기능 유지 및 행정 서비스 품질향상, 구청장과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Ⅳ 행정사항

- 전산정보과 : 강남구 홈페이지에 국외부재자 접수 안내 및 중앙선관위홈페이지 (<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와 링크
- 동주민센터 : 국외부재자 접수 창구 개설 및 안내표지·신고서 비치

【붙임1】 국외부재자신고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행정자치부 별도 통보사항까지만 자체 구입)

[별지 제59호의4서식] (규칙 제 136조의4제1항 관련) <알록>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뒷쪽에 기재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서

접 수	번호	
	일시	
	기관명	
	접수자	(서명)

성명 ¹⁾	한글	영문 (대문자)	
여권번호	※ 여권 번호는 왼쪽부터 기재합니다.		
국외부재자 구분 ²⁾ (해당란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input type="checkbox"/> 주민 등록자	주민등록 번호	-
		주소 (주민등록표상)	(시·도) (구·시·군)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국내거소 신고자	국내거소 신고번호	-
		국내거소 신고지	(시·도) (구·시·군) (읍·면·동)
연락처 ※ 반드시 필수 안에 기재	전화번호 ³⁾ (가정·직장용)	(국가번호) (지역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³⁾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⁴⁾ (E-mail)	@	
국외거소 ⁵⁾ (국외에서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 ※ 반드시 필수 안에 기재	거류국명		우편번호
	주소 ※ 영문 또는 로마자 대문자 표기 가능	<input type="checkbox"/> 공관을 거소로 신고할 사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한 후 "주소"란에 공관명만 기재	
	주소 ※ 현지 공용어 표기 가능		
현지어주소 · 통용성명 · 문태명 등	<input type="checkbox"/> 부표예정공관 ⁶⁾		
국외부재자 ⁷⁾ 신고사유 (해당사유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input type="checkbox"/>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 귀국이 예정된 사람		<input type="checkbox"/>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
	<input type="checkbox"/> 외국에 파병되었거나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파병될 군인·군무원	국방부장관 또는 부대장의 직명(성명) _____ (인)	
본인은 「국적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에 따라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며, 선거권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정보, 주민등록정보, 수험정보, 국내거소신고정보, 여권정보 등의 개인신상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붙임 : 여권사본 ⁸⁾ 1부.			
구·시·군의 장 귀하		년 월 일	신고인 ⁹⁾ : _____ (서명 또는 날인)

※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본 신고서를 재외공관에 서민(방문·우편 등)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1. 이 신고서 제출 시에는 반드시 여권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파병군인이나 군부원은 아래 “작성요령 7” 참조
2. 이 신고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또는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는 등 신고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모든 사항은 정자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 또는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아니하며,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여권에 적혀있는 성명(영문포함)을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 다만, 여권의 성명과 가족관계등록부(※제)상의 성명이 다른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제)상의 성명을 적습니다.
2. “국외부재자 구분”란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해당란에 표시 후 ‘주민등록번호’와 ‘대한민국 주소’란을 적고, 국내거소신고한 사람은 해당란에 표시 후 ‘국내거소신고번호’와 ‘국내거소신고지’란을 적습니다.
3.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란에는 거류국에서 연락이 가능하도록 가정·사무실 등의 전화번호(국가번호-지역번호-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는 국외부재자 요건확인, 투표용지 등 우편물 수취여부 확인, 투표기간·장소 등 안내, 그 밖에 각종 선거정보 제공에 활용됩니다.
4. “전자우편(E-mail)”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발송하는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송부,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통지, 이의신청 결과 안내, 투표기간·장소·지참물 등 각종 선거관련 정보·자료 등의 제공에 활용되므로 이러한 자료 등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5. “국외거소”란은 거류국에서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를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반드시 점선안에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필수 기재사항”란의 거류국명과 주소는 로마자 또는 영문대문자로 적어야 합니다.
 - “임의 기재사항”란에는 거류국의 집배원 등이 우편물을 정확히 배달할 수 있도록 현지 통용어로 주소·통용 성명·문패명(○○씨 데 등 배달 참고사항)을 적습니다.
※ 다만, 직장·생업·이사·주소불확정·거류국의 우편제도 미비 등의 사유로 국외에서 우편물을 받아보기 어려운 사람은 공관을 거소지로 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시 후 “주소란”에 공관명만을 기재합니다.
6. “투표 예정공관”은 재외투표기간 중 실제 투표하고자 하는 공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7. “국외부재자 신고사유”는 해당란에 표시 합니다
※ 파병군인이나 군부원은 국방부장관 또는 부대장의 확인(인)을 받은 것으로 여권사본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8. “여권사본”은 사진·성명·생년월일 등 여권에 기재된 내용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A4용지(Letter지 포함)에 깨끗하게 복사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9. 끝부분의 “신고인”란에는 반드시 본인이 성명을 적고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국외부재자신고 안내문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2016. 4. 8. ~ 4. 9)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